

담양군의회 입법지원 규칙안 예고

「담양군의회 입법지원 규칙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1. 20.

담양군의회 의장



1. 규칙명 : 담양군의회 입법지원 규칙안

2. 제안이유

담양군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원입법초안 검토의뢰 (안 제4조)

나. 검토실시 및 검토보고서 작성 (안 제5조)

다. 집행기관 의견조회 및 의견서 송부 (안 제6조~제7조)

라. 입법전문가의 자문 의뢰 (안 제9조)

마. 입법지원팀의 최종 결과 송부 (안 제10조)

바. 입법초안 검토기간 (안 제11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3. 1. 20.~1. 27.(8일간)

5. 의견제출

- o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
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전화 : 061-380-3507~8(FAX 061-380-3590)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6. 규칙안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서식

의견서		
1. 조례안	담양군의회 입법지원 규칙안	
2. 의견	관련조문	의견
3. 기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1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		

담양군의회 입법지원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입법초안”이란 담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안을 접수하기 이전 단계에서 초안 형식으로 작성한 자치법규안을 말한다.
2. “입법지원팀”이란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면서 자치법규 입안을 위한 입법 자료 수집,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원이 의안으로 접수하기 이전 단계에서 사전 검토의뢰하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의원입법초안 검토의뢰) 의원은 자치법규안을 발의하기 전에 입법지원팀에 의원입법초안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검토 실시 및 검토보고서 작성) ① 입법지원팀은 의원으로부터 의뢰받은 의원입법초안에 대하여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한 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② 입법지원팀이 작성하는 검토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검토사항
4. 타 지자체 운용사례
5. 초안·검토안 조문대비표
6. 관계법규 발췌(근거법규, 관련법규)
7. 참고사항

제6조(집행기관 의견조회) 입법지원팀은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원입법초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집행기관 의견서 송부) 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의견서는 검토 의뢰 의원에게 송부한다.

제8조(합동검토) 입법지원팀은 의원입법초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 등이 참여하여 합동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입법전문가 자문) 입법지원팀은 의원입법초안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담양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최종 결과 송부) ① 입법지원팀은 의원입법초안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면 검토의뢰 의원에게 최종 결과를 송부한다.

② 제1항의 최종 결과를 송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치법규 제안문(조정문)

2. 자치법규 입법안(조정안)
3. 신·구조문 대비표(개정안의 경우)
4. 관계법규
5. 참고의견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1조(검토기간) ① 의원입법초안 검토의뢰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보장하기 위해서 검토의뢰서가 접수된 날부터 결과를 송부하는 날까지의 기본 검토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정 및 전부개정안 : 30일
2. 일부개정안 : 20일

① 제1항의 검토기간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토의뢰 의원과 협의를 거쳐 검토기간을 기본 검토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검토보고서의 생략) 입법지원팀은 사안에 따라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의견만 제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